

주류경제학에서 윤리성 논제 실종 문제의 근원

이종철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I. 서론

경제는 사회의 주축이 되는 양상이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생활물자를 얻기 위해 경제활동을 해 왔고, 경제는 사회형성의 중요한 동인이 되어 왔으며, 경제적 조건은 사회의 성격을 규정해 왔다. 생산, 분배 및 소비에서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경제는 자연과 사회의 연결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자연이 기초가 되고 자연법을 내포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는 자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양상이 개현된다. 그것은 윤리성이다. 사회질서는 윤리에 기초하여 유지된다. 개인이나 조직의 비윤리적 행위는 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본디 도덕론의 바탕 위에 경제학을 구축하였으나 지금 주류경제학에는 윤리성과 결부된 입론을 찾기 힘들다. 근년에 세계경제를 위기 상황까지 가게 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인간의 탐욕이라는데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져 있으나 주류경제학은 이 근본문제를 다룰 개념 틀과 방법론이 결여된 채로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현실성이 다시금 문제가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주류경제학에서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경제 분석의 근간으로 하며 윤리성 논제는 실종되었다. 문제의 근원은 주류경제학의 패러다임(paradigm)을 대변하는 ‘경제인(Homo Economicus)’의 인간상에서부터 찾아나갈 수 있다. 경제 분석은 경제주체로서의 ‘경제인’을 전제로 하는데, 윤리성 부재의 경제학은 근원적으로 ‘경제인’의 무윤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경제인’은 공리주의적 인간상의 전형이다. 주류경제학과 공리주의의 불가분리적 관계는 ‘경제인’의 인간상에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주류경제학에서 윤리성은 실종된 채 합리성과 효율성만이 경제 분석의 주축이 된 문제의 근원을 규명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리주의와 결합된 경제학에서는 필연적으로 윤리성이 합리성에 기초한 효율성으로 치환됨을 논증한다.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논증을 위하여 먼저 공리주의 사상의 시원과 본질을 밝히고, 그것에 비추어 공리주의의 선과 윤리에 관한 언표들을 정합적으로 해석하고, 명제화 한다. 주류경제학과 공리주의의 간의 관계를 명료하게 보기 위해 각각의 원형(archetype)과 태생적 관계에 주목한다.

II. 주류경제학과 공리주의

주류경제학과 공리주의 각각은 한 가지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류경제학은 넓은 의미의 신고전학과 경제학, 공리주의는 벤담-밀-시즈윅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공리주의를 뜻한다. 경제학과 공리주의의 상호연관성은 이들 각각의 원형(archetype)들을 통하여 명료하게 밝힐 수 있다. 원형은 최초의 것, 혹은 본질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변형들이 생겨나되, 원형의 핵심 요소 혹은 본질적 특성은 변형들에 공유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원형은 특정 사상과 결부되어 있거나 사상 그 자체이다.

1. 공리주의 윤리사상

공리주의는 본래 윤리사상이다.⁷⁹⁾ 공리주의 사상은 벤담의 공리의 원리(principle of utility)에서 그 원형의 핵심을 볼 수 있다. 공리의 원리란 “어떤 행위든지 그 결과에 영향 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 같으면 도덕적으로 승인하고, 행복을 감소시키는 쪽이면 도덕적으로 부인하는(Bentham, 2000: 14)” 도덕적 판단 원리이다.⁸⁰⁾ 행위에는 개인의 행위는 물론 정부의 조치나 정책수행도 포함된다.

공리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벤담의 인간관·세계관에 기초한 것이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pain)과快락(pleasure)이라는 두 지배자의 치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지시하고, 무엇을 해야 할는지 결정케 하는 것은 오직 이 두 지배자뿐이다. 이들의 절대적 권위에 의해 옳고 그름이 같고, 인과관계들이 규정되는 것이다(Bentham, 2000, 14).”⁸¹⁾

79) 도덕과 윤리 두 용어는 좁은 의미로서 도덕은 개인의 도덕, 윤리는 사회 윤리의 뜻으로 사용하거나, 넓은 의미로서 윤리는 도덕적 판단의 근거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도덕, 윤리, 윤리규범, 규범 등의 용어를 뜻의 구분 없이 사용한다.

80) 인용은 다음 원문의 일부를 인용, 번역한 것임. “By the principle of utility is meant that principle which approves or disapproves of every action whatsoever according to the tendency it appears to have to augment or diminish the happiness of the party whose interest is in question: or, what is the same thing in other words to promote or to oppose that happiness. I say of every action whatsoever, and therefore not only of every action of a private individual, but of every measure of government .(Bentham, 2000: 14)”

81) 원문은 “Nature has placed mankind under the governance of two sovereign masters, pain and pleasure. It is for them alone to point out what we ought to do, as well as to determine what we shall do. On the one hand the standard of

이 언명은 벤담의 공리주의의 서두요 기본전제이다.

공리의 원리는 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의해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쾌락(행복)의 증진 여부를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⁸²⁾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이 옳고 그름의 척도(Bentham, 1891: 93)”라는 최대 다수의 원리(greatest happiness principle)는 ‘행위는 쾌락(행복)을 증진시키는 정도에 비례하여 옳으며, 고통을 산출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르다’라는 내용면에서는 공리의 원리와 다르지 않지만 규범적으로 더 적극적인 언표라고 볼 수 있다.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쾌락(행복)이 선이므로, ‘최대행복’은 최고선이 된다. 공리주의의 특성 중 하나로서 최대주의(maximalism)를 드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최대다수’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공리의 원리에서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위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와 관련되지만, 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쾌락(행복) 증진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규범성을 내포한다.⁸³⁾

2. 주류경제학과 공리주의

신고전학파의 형성은 1870년대 초의 한계혁명에서 비롯되었고, 그 원형은 제본스의 효용극대화 모형으로 완성되었다. 이는 공리주의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태생적으로 공리주의의 사상을 담고 있고, 공리주의는 일차적으로는 경제학을 통하여 그 사상이 학문적으로 구현되고, 이론화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호연관성은 경제학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경제인’의 성격에서 명료하게 볼 수 있다.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여 인간을 탐구 대상으로 하는 사회관련 학문은 이론적 사유에서 전제하는 인간상이 있기 마련이다. 사회를 형성하는 인간의 동물과 다른 특성은 합리성과 윤리성이다. 따라서 사회관련 학문은 합리적, 윤리적 인간을 전제로 한다.

right and wrong, on the other the chain of causes and effects, are fastened to their throne. (Bentham, 2000: 14”)

82) 벤담의 기본전제와 ‘공리의 원리’에서는 행복(happiness), 쾌락(pleasure), 효용(utility) 등이 주된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벤담의 용어로서 ‘효용’은 사물 또는 행위의 유용성으로서 쾌락(행복)을 산출하는 유용성이다. 쾌락과 행복은 거의 구별 없이 쓰인 용어인데, 행복의 크기는 쾌락의 크기에서 고통의 크기를 뺀 것으로 계측하였다. 공리주의에서 사물과 행위의 궁극적 의의는 오로지 쾌락(행복)의 산출에 있으므로, 사물과 행위의 가치는 오직 그 효용에 의해 규정된다. 공리주의와 결합된 신고전학파의 원형에서 효용가치설의 출현은 필연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쾌락과 행복을 구별하지 않고 묶어서 쾌락(행복)이라고 표현한다.

83) 원문은 “it is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that is the measure of right and wrong(Bentham, 1891: 93)”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 ‘경제인’은 주어진 정보와 제약조건 하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 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이다. ‘경제인’이 합리성만을 드러내고, 윤리성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제인’이 공리주의적 인간상인데 기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리주의는 본래 윤리사상이다. 사상사적으로 공리주의는 자연주의 윤리사상의 근·현대적 전형이다. 자연주의에서는 사설로부터 당위를 정립하는데, 인간의 본성의 ‘사실’로부터 윤리의 원리로서 ‘공리의 원리’를 정립하는 공리주의가 그 전형이다. 공리주의는 경제학에 들어와서 윤리성을 합리성의 결과로서 도출되는 효율성으로 치환한다.⁸⁴⁾

주류경제학은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과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을 구분한다. 실증경제학은 인간 본성의 ‘사실’로서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인’을 행위의 주체로 하여 경제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중심이다. 규범경제학에서는 ‘최대행복의 원리’에 결부된 효율성 개념을 가치판단의 주된 개념으로 하여 정책, 시장, 사회경제 체제 등을 판단한다. 주류경제학에서 주축은 실증경제학적 이론이다. 여기서 ‘경제인’의 자기 이익 추구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쾌락(행복)의 추구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인’은 주어진 제약 하에서 자기 쾌락(행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고 행하는 주체이다. 이와 같은 ‘경제인’의 목적 지향적 합리성은 공리주의적 합리성의 전형이다. 규범경제학에서는 개인들 전체로서의 사회 집단의 쾌락(행복)의 극대화, 경제학적 용어로 바꿔 말하면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규범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어진 자원의 제약 하에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이루는 ‘경제의 효율성’이 중심 개념이다.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의 내적인 연관성은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오로지 쾌락(행복)만을 추구한다는 인간 본성의 ‘사실’에 인과관계를 귀속 시킬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의 규범을 귀속 시키는 공리주의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류경제학에서는 개인의 합리성과 경제의 효율성이 핵심 개념이 되었는데, 이는 공리주의 윤리 사상이 경제학에 투영된 결과이다.

인간 본성의 ‘사실’로부터 인간 윤리의 원리를 도출하는 공리주의의 근원은 자연주의 윤리사상에 있다. 다음 장에서는 공리주의의 자연주의적 속성을 봄으로써, 공리주의적 윤리성의 본질과 공리주의와 결부된 경제학의 사상적 근원을 살펴본다.

III. 공리주의와 자연주의

공리주의는 자연주의의 한 부류이며, 근·현대 자연주의 사상의 주요 유형이다. 특히, 공리주의 윤리사상의 근원은 자연주의 윤리사상에 있다.

84) 이에 대한 논증은 IV장에서 보인다.

1. 자연주의 윤리사상

자연주의는 크게 존재론적 자연주의와 방법론적 자연주의로 나뉜다. 존재론적 자연주의(ontological naturalism)는 철학적 자연주의(metaphysical naturalism)라고도 하는데, 초월적·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정신현상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현상과 그 변화의 근본원리가 자연(물질)에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방법론적 자연주의(methodological naturalism)는 초자연적 실재의 존재 여부, 초자연적 현상의 실제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상 간의 인과 관계를 인식하고, 설명, 예측함에 있어 초자연적 존재나 그 작용을 상정 않는 학문 방법론적 자연주의이다.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적 방법이 진실을 발견하고 참된 지식을 획득하는 효율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여기는 사조이다.

공리주의의 윤리사상은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근거한 자연주의 윤리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⁸⁵⁾ 자연주의 윤리사상의 원천은 고대 그리스 에피쿠로스학파(Epicurean school)와 쿼레네학파의 헤도니즘(hedonism)에서 찾는다. 헤도니즘은 페락주의로 번역되는데, 쿼레네학파는 감각적, 육신적 페락을 중시하고, 에피쿠로스학파는 정신적 행복을 중시하였다. 밀(John Stuart Mill)은 저급의 페락(lower-quality pleasures)과 고급의 페락(higher-quality pleasures)을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쿼레네학파의 페락, 후자는 에피쿠로스학파의 행복에 가깝다. 헤도니즘은 페락이 진정한, 유일한 선이요, 가치는 페락을 놓는 유용성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벤담의 효용 개념이 바로 이 가치 개념이다. 페락(행복)이 인간의 기본 동기이며, 궁극목적이므로, 페락(행복)추구는 인간의 권리이고, 결과적으로 페락(행복)을 놓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⁸⁶⁾ 즉, 자연주의적 윤리론에서 자기 자신의 페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이중적으로 정당화 된다. 본성에 따라 페락(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로서 정당하고, 또한 행위의 결과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영향 받는 사람들의 페락(행복)을 증진시킨다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자연주의 윤리사상의 특성은 사실로부터 당위(규범)를 도출한다는 데 있다. 이론적 사유에서 윤리의 문제는 ‘선’의 의미를 규정하는 문제와 ‘옳은 행위’를 규정하는 문제로 나눈다. ‘옳은 행위’는 ‘선’을 이루는 행위로 규정한다면, 윤리론의 초점은 선을 규정하는 문제가 된다. 헤도니즘에서 ‘선’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결부된다. 즉,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페락을 갈망하고 고통을 기피한다는 사실로부터 페락은 그 자체로 선이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자연주의 윤리사상의 특성이 벤담의 공리주의에 이어지고, 근대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85) 존재론적 자연주의는 고대 철학에서 세계관으로는 유물주의(materialism), 윤리사상으로는 헤도니즘(hedonism, 페락주의)으로 대생한 것이다.

86) 이 논문에서 페락과 행복을 따로 쓰지 않고 묶어서 쓰는 이유는 쿼레네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 벤담과 밀의 페락과 행복의 의미를 함께 담기 위함이다.

2. 자연주의적 오류와 공리주의

공리주의의 ‘선’관념은 ‘사람이란 본성적으로 결국 페락(행복)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페락(행복)은 유일한 선이다’라고 정리된다. 여기서 ‘페락(행복)이 유일한 선’이라고 하는 선에 관한 언표는 공리주의의 윤리사상의 두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선’을 정의하되 오로지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험적 사실로서 ‘선’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선은 페락(행복) 이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다’라는 말은 ‘선은 경험적 사실로 나타나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페락(행복)을 이루는 것이 선이요, 결과적으로 페락(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옳은 행위라는 공리주의적 윤리 규정도, 오로지 자연적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만 윤리를 정의하고, 윤리적 판단을 하는 원리를 나타낸다. 둘째, 오로지 인간에게 좋은 것으로서 선을 정의하는 것이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인 페락(행복)은 인간 자신에게 한없이 좋은 것이요, 궁극적으로 유일하게 좋은 것이며, 선이란 인간 자신에게 좋은 것 이외의 다른 무엇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 무어(George E. Moore)는 사실로부터 규범을 도출하고, 사실 판단만으로 윤리 판단을 하는 자연주의 윤리론은 오류라고 지적하고, 이를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라고 하였다(Moor, 1980). 자연주의적 오류의 전형적인 예가 공리주의 윤리론이다. 공리주의에서 윤리 규범을 정립하는 근원적 사실은 인간 본성의 ‘사실’이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페락(행복)을 갈망하고 추구한다는 이 근원적 ‘사실’로부터, ‘페락(행복)은 선이고, 결과적으로 페락(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는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윤리 규범을 정립하는 바, 윤리의 근거로도 자연적 경험적 사실 이외에 어떤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요, 윤리 판단도 오로지 사실 판단에 의한 것으로 환원되는 구조이다.⁸⁷⁾

공리주의 윤리론에서 자연주의적 오류는 필연적이다.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바탕을 둔 자연주의 윤리론에서는 자연적 속성과 분리된 독자적인 도덕적 속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도덕관념은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되며, 윤리 판단은 경험적 자연적 속성만을 내포하는 사실

87) 무어에 의하면, ‘자연주의적 오류’에서 ‘오류’의 근원은 정의할 수 없는 ‘선’을 정의하는 데 있고, 이 오류가 ‘자연주의적 오류’인 것은 선을 오직 경험적인 자연적 속성으로서 정의하는 데 있다. 어떤 것이 정의 가능하라면, 그것은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거나 여러 속성을 지니거나 여러 양상들이 나타나는 복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노량’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것으로서,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선’도 이와 같은 단순한 것으로서, 정의될 수 없고, 오직 ‘선’을 속성으로 하는 실재를 통하여 직관될 수 있을 뿐이다. ‘선’ 자체는 다른 속성으로 환원되거나 치환될 수 없는 독자적인 것이다. ‘선’은 ‘선’일 뿐이다. 무어에 따르면, ‘선’을 ‘페락(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공리주의는 ‘선’을 다른 속성인 페락(행복)으로 치환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며, 페락(행복)이라는 오직 경험적인 자연적 속성으로서 선을 정의함으로서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Moor, 1980: 7).

판단으로 치환된다. 자연주의 윤리론과 궤를 같이 하는 공리주의에서는 필연적으로 선을 경험적 자연적 속성으로 정의하게 되므로 무어의 ‘자연주의적 오류’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무어의 ‘자연주의적 오류’ 논변은 ‘쾌락’과 같은 자연적 속성을 ‘선’과 같은 비자연적 속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비자연적 속성이 내포되는 윤리 판단의 명제는 경험적, 자연적 속성만을 포함하는 사실 판단의 명제로 환원될 수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다’라는 사실로부터 ‘~이어야 한다’는 윤리의 원리가 도출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IV. 공리주의 윤리론 비판

‘공리의 원리’ 또는 ‘최대행복의 원리’로 대표되는 공리주의 윤리론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로 제기될 수 있다. 첫째는 공리주의 윤리성이 규범으로서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가를 묻는 본질에 대한 비판이고, 둘째는 공리주의 윤리론이 내적인 정합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묻는 정합성에 대한 비판이다. 규범의 본질 문제는 거대담론적 주제이지만 윤리 규범의 판단 대상으로 좁혀 구체화 하면, 행위의 결과를 판단 대상으로 하는 공리주의 윤리론과 행위의 의도, 동기를 판단 대상으로 하는 칸트의 윤리론으로 나눌 수 있다. 칸트의 윤리는 행위를 이끌거나 지도하는 규범성을 지니는 데 반하여, 공리주의의 윤리성은 이와 같은 행위 지도의 규범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리주의 윤리론의 내적 정합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어 공리주의 윤리론이 결과주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규명하고, 따라서 행위 규범성을 갖추지 못하게 됨을 논증한다. 행위 규범성의 최소 조건은 자기 자신의 이익의 최대화 추구하는 행위 주체가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쪽으로 행위하지 않고, 어느 정도 행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윤리론에서 행위 규범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규범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행위 규범을 준수할 내적 동기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

공리주의 윤리론의 내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리주의 언표들을 정합적으로 해석한다. 공리주의 체계 내에서 행위 규범성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희망(행복)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이 자기 자신의 희망(행복)이 최대화 되는 쪽으로 행위를 하지 않고 행위를 조절함을 뜻한다.

1. 공리주의 윤리론의 난점

비자연적 속성과 자연적 속성이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구별하지 않고 치환하는 자연

주의적 오류는 공리주의 윤리론에서 불가피한 난점을 야기 시킨다. 형식면에서는 논리의 비약으로, 내용면에서는 역설과 몰규법성으로 나타난다.

형식논리적 비약은 선에 대한 정의에 내재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희망(행복)만을 갈망하고 추구하므로, 희망(행복)은 유일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인데, 공리주의에서는 왜 이와 같은 논리적 비약이 남겨질 수밖에 없었겠는가?

논리적 비약 없이 결론으로서 ‘희망(행복)이 유일한 선’임을 도출하자면, 전체로서 ‘선’을 규정해 놓아야 한다. 존재론적 자연주의 입장에서는 전제에서 규정되는 ‘선’은 경험적 관찰이 가능한 사실에 의거한 것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조건 하에 형식논리상 결론에 정합적인 전제를 취하여 삼단논법 형식으로 체계화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대전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이 선이다.

[소전제] 모든 사람은 오직 희망(행복)만을 추구한다.

[결론] 그러므로 희망(행복)만이 유일한 선이다.

‘선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규정한 [대전제]에 의해 이 체계 내에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논리적 비약의 문제는 불식될 수 있겠으나, 내용상으로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대전제]는 이 체계에서 [결론]을 내용상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든다. 이는 ‘선한 것’을 X라고 바꿔 놓고 보면 분명해진다.

[대전제1]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이 X이다.

[소전제1] 모든 사람은 오직 희망(행복)만을 추구한다.

[결론1] 그러므로 희망(행복)만이 유일한 X이다.

X가 ‘악’이라고 하면, [결론1]은 ‘희망(행복)은 악이다’라고 도출되며, 이것도 이 체계 내에서는 논리적 하자 없이 도출되는 참인 결론이 된다. 이로 보건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는 한, [대전제]에서는 단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을 ‘선’이라고 이를 지은 것이 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에서 ‘희망(행복)이 ‘선’이다’는 ‘희망(행복)은 ‘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희망(행복)의 이름이 ‘선’이라고 도출된 것 이외의 다른 내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론적 자연주의의 바탕 위에 있는 공리주

의에서는 선이 경험적, 자연적 사실과 꾀리된 그 무엇일 수 없으며,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적 사실적 근거인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 이외의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이와 같이 논리적 비약의 문제를 없이 하기 위한 전제의 도입은 ‘쾌락(행복)이 선이다’라는 결론을 ‘쾌락(행복)을 ‘선’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므로, 전제의 도입 없이,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오직 쾌락(행복)을 추구하므로 쾌락(행복)은 유일한 선이다’는 명제를 논증 없는 기본명제로 정립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기본명제가 단지 쾌락(행복)에 ‘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2. ‘선과 쾌락(행복)의 동일성’의 의미 해석

선에 관한 공리주의의 기본명제는 ‘쾌락(행복)은 선이고, 선은 쾌락(행복)이다’라는 선과 쾌락(행복)의 동일성 명제이다. 선과 쾌락(행복)의 동일성은 선을 규정하는 근거를 ‘모든 사람들에 의해 추구된다’는 것과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쾌락(행복)뿐이다’라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근거도 갖지 않는 공리주의적 인식, 즉,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바탕을 둔 인식의 필연적 결과이다. 앞선 의미 물음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 된다. ‘선과 쾌락(행복)의 동일성이 동어반복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첫째, 공리주의의 동일성 명제는 인간이 선·악을 규정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임을 선언한다. 선이란 다른 무엇이 아니고 인간 자신에게 좋은 것인 쾌락(행복)일 뿐이라는 규정이며, 어떤 사물이나 사태가 인간에게 쾌락(행복)을 결과하는 것이면 선한 것이고, 인간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쾌락(행복)을 증진시키는 데로 이어진다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둘째, 동일성 명제가 동어반복적이 아니라면, 선과 쾌락(행복)은 각기 다른 의미 근원을 가져야 한다. 우선 선의 의미 근원으로서 가능한 두 가지는 ‘옳음’과 ‘좋음’이다. 공리주의에서는 선한 것을 모든 인간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요, 이는 ‘인간에게 좋은 것’이라고 규정한다. 즉, 선의 의미 근원을 ‘좋음’에서 찾는다. 동일성 명제는 ‘인간에게 좋은 것은 오로지 쾌락(행복)뿐이다’라는 뜻이며, 이는 인간에게 좋은 것으로서의 쾌락(행복)의 배타적 유일성을 뜻 한다. 선의 의미 근원이 ‘좋음’에 있다면, 쾌락(행복)의 의미 근원은 이와 달라야 한다. 그런데 특히 행복의 뜻을 한정하지 않으면, 행복이란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관념적으로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 동일성 명제는 다시 동어반복적이 된다. 따라서 동일성 명제는 쾌락(행복)이 단지 인간이 좋아하고, 인간에게 좋은 것이라는 관념적인 ‘좋음’이 아닌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쾌락(행복)을 지칭함을 드러낸다. 즉, 공리주의에서의 행복이란 심리적, 정신적으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쾌락(행복)을 뜻하는데, 존재론적 자연주의에서 심리적, 정신적 현상은 자연적(물질적) 작용이므로, 쾌락(행복)은 자연적(물질적) 작용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공리주의의 동일성 명제는 선을 규정하는 주체인 인간과 이 규정에 의해 판단을 받는 객체인 인간의 분리를 예견케 한다. ‘선은 쾌락(행복)이다’라고 선을 규정함은 윤리 규범의 근거로서 의의가 있는 것인데, 윤리는 근본적으로 인간관계의 규범이므로 이와 같은 선의 규정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규명하여야 한다. 우선 ‘선은 쾌락(행복)’이라고 규정하는 주체는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의 주체인 인간인데, 이 규정에 의해 선·악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객체도 결국은 인간이 되어 이 동일성 명제는 쾌락(행복)의 산출과 향유(소비)관계로서 인간관계가 맺어짐을 예견케 한다. 여기서 선·악의 판단 대상이 결국 인간이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자연적(물질적) 작용의 결과로서의 쾌락(행복)은 일차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소비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재화와 서비스 생산자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비에 의해 결과적으로 쾌락(행복)이 얻어진다면, 그 재화 또는 서비스 생산자는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공리주의적으로 해석하자면, 생산과 소비의 경제활동은 궁극적으로는 쾌락(행복)의 산출과 향유(소비)를 위한 수단적 행위의 집합이고, 경제사회는 본질적으로 쾌락(행복)의 산출과 향유(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이며, 경제주체들은 결국 쾌락(행복)의 산출자와 향유(소비)자의 관계로 맺어지고, 선·악 판단의 주체와 객체로 서게 된다.⁸⁸⁾ ‘인간이 선하다’는 진술은 공리주의적으로는 ‘쾌락(행복) 추구의 대상(객체)으로서의 인간이 선하다’, 쾌락(행복)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뜻이 될 것이다. 쾌락(행복)을 추구하고 쾌락(행복)이 유일한 선이라고 규정하는 행위주체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타자를 포함한 모든 사물은 쾌락(행복)추구의 대상이요, 쾌락(행복)을 산출하는 객체가 되는 것이다. 동일성 명제는 이와 같이 선을 규정하는 주체인 인간과 이 규정에 의해 판단을 받는 객체인 인간을 일단 분리시키지만, 여기서 판단을 받는 객체도 또한 본성적으로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의 주체이므로 인간은 상호 간에 주체로서 판단하며 객체로서 판단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리주의 윤리론에서 인간은 스스로 정한 선·악 규정에 의해 타자를 판단하고, 타자로부터 판단을 당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선·악 판단은 배제하는 구조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88) 염밀히 말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는 쾌락(행복) 증진의 수단의 산출자가 된다. 이 맥락에서 경제사회를 본다면, 고대 사회의 노예, 중세봉건사회와 농노, 지주 제 하의 소작농,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 노동자는 쾌락(행복) 증진 수단의 주요 산출자가 된다. 공리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선 관념은 모순적이다. 단적으로 고대 노예사회에서 쾌락(행복)의 근원적 산출자는 노예로서 선한 존재인데, 그는 또한 수단으로서 팔리는 상품과 같이 취급된 것이다.

넷째, 동일성 문제는 또한 선·악의 판단 대상과 행위 윤리 판단의 대상을 다르게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악의 판단 대상은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 주체에게 결과적으로 쾌락(행복) 또는 고통을 주는 객체로서의 인간이다. 다른 한편, 윤리 판단의 대상은 근원적으로는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주체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윤리체계를 구조적으로 보면, 윤리 규범의 기초인 선을 규정하는 주체와 윤리 규범의 판단 대상인 행위 주체가 동일인이고, 선의 판단 대상은 행위 주체에 대한 타자를 포함한 사물이 되는 구조이다. 즉, 인간 자신이 선을 규정하고 윤리 규범을 만드는 것이며, 근원적으로는 인간이 본성으로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윤리 규범을 만족시킨다는 내용이다.

다섯째, 공리주의의 동일성 문제는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암묵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쾌락(행복)만을 선이라고 규정하는 근거는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궁극적으로 쾌락(행복)만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 본성에 대해 선함(좋음) 등의 판단을 하자면, 선함(좋음) 등이 인간 본성 자체와는 다른 근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⁸⁹⁾ 그 근원의 단서는 “자연은 인류를 고통(pain)과 쾌락(pleasure)이라는 두 지배자의 치하에 두었다.(Bentham IPML, Ch. 1, para 1)”는 벤담의 언표에서 찾을 수 있다.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뿌리를 둔 공리주의는 ‘자연의 인간 지배, 즉 자연의 인간 조성’을 전제로 함을 추론할 수 있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존재론적 자연주의의 이와 같은 인간관은 근대의 진화론(사회 진화론 및 자연 진화론)과 케를 같이한다. 진화론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 사물과 인간 사회가 발전적으로 진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리 되어 간다는 사상이요, 믿음이다. 자연의 선택(natural selection)에 따라 인간 본성은 좋은 쪽으로 진화되어 온 결과라는 의미이다.

3. 공리주의 윤리론의 결과주의와 보편주의

‘쾌락(행복)을 증진 시키는 행위가 정당하다’는 윤리 규범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쾌락(행복)의 증진을 추구한다’는 ‘사실’과 함께 놓으면, ‘인간이 본성에 따라 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윤리 규범이라고 할 수 없다. ‘윤리적 행위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규범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든지, ‘윤리는 행위 지도적 구실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논변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그친다면, 공리주의 윤리 규범은 그야말로 물규

89) ‘선’ 개념이 인간 본성의 ‘사실’과 다른 근원에서 정립된다면, 공리주의 윤리론의 논리상의 난 점은 해소되는 셈이다.

법적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오로지 인간 본성의 ‘사실’로부터 윤리 규범을 도출한 데 수반된 것이다.

이와 같은 근원적 성격의 공리주의 윤리사상은 필연적으로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취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규범성을 확보하게 된다. 결과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의 결과로서 쾌락(행복)이 증진되는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다. 행위의 의도는 윤리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보편주의는 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쾌락(행복)이 절대적으로 증진되는가 여부, 즉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크기를 빼 쾌락(행복)의 순 증가가 있었는가 여부로서 판단하는 것이다. 결과주의와 보편주의를 합하여 ‘보편적 결과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다. 결과주의는 인간이 본성대로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윤리 규범을 만족 시킨다는 물규범성을 탈피할 수 있게 한다. 그 대신 인간 행위의 동기, 의도 등을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공리주의의 윤리 판단은 인간 행위의 동기, 의도에 대한 윤리 판단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왜냐하면, 인간 행위의 동기(의도)는 모두 쾌락(행복) 추구에 있다는 것이 공리주의의 기본명제이기 때문이다.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 주체로서 인간에 대한 선·악 판단이나 행위의 동기나 의도에 대한 윤리 판단은 의미 없는 것이며, 오로지 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 만이 의미 있는 판단이 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은 공리주의의 동일성 문제 가 윤리적 의미를 갖기 위한 필연적 귀결인 셈이다. 보편주의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적 이기주의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물규범성을 벗어나게 한다. 보편주의의 일차적인 의의는 자기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위가 타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고려한다는데 있다. 즉, 보편주의는 결과주의와 결합하여 행위를 판단하는데, 그 행위의 결과, 행위 주체인 개인의 쾌락(행복) 증진을 가져 왔느냐를 판단요소로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타자에게 고통(또는 쾌락(행복))을 초래하였느냐 여부도 또한 판단요소로 하여야 함에 있다.

결과주의와 보편주의는 동일성 문제에 내재된 논리적 비약의 문제를 불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성 문제의 의미 물음에 의해 제기된 공리주의 윤리 규범의 근원적 물규범성을 해소 시키는 구실을 한다.

4. 공리주의 윤리론의 역설

‘사실’로부터 규범을 도출하는 공리주의의 자연주의적 윤리론은 형식논리적 비약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 역설적이다. 공리의 원리, 최대행복의 원리에는 인간 본성과 윤리 규범 간에 역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공리주의적 인식은 모든 사람의

자연적 본성은 결국 자기 자신의 폐락(행복)을 갈망하고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로부터 ‘폐락(행복)은 유일한 선’이라는 선 개념과 폐락(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는 윤리 규범이 정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대행복의 원리’에 내포된 행복이란 행위 자체 자신의 폐락(행복)만을 지칭함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해석하자면, 폐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 자신의 폐락(행복)은 희생하더라도 최대다수의 폐락(행복)이 증진되는 쪽으로 행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해석한다 해도, 본성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폐락(행복)을 추구하는 주체가 윤리적으로는 자기 자신 보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행위의 윤리 규범이 그 정립의 근거가 되는 인간 본성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이 역설적 관계는 인간 본성의 ‘사실’로부터 윤리 규범이 논리적 정합성을 갖춘 논증을 통하여 도출된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단지 ‘사실’을 근거로 규범을 정립한 것뿐이다. 실제로 공리주의에서는 공리의 원리(최대행복의 원리)를 ‘증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명이 불필요한’ 자명한 것으로 놓고 이를 시발점이 되는 근본 원리로 삼아 모든 윤리론을 전개한 것이다.

그러면 이 역설은 해소될 수 없는 것인가? 공리주의적인 인간 본성의 ‘사실’과 윤리 규범이 논증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상호 배치되지 않도록 해석될 수 있다.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들은 모두 공리주의의 근원 사상에 정합적인 해석이다. 한 가지는 선 개념의 정립을 선 관념의 형성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인간 본성의 ‘사실’이 윤리 규범을 관통하도록 정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인간 본성에 따른 행위가 결과적으로 윤리 규범을 만족 시킨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먼저, 공리주의 사상의 근원으로 들어가 선 관념 형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근원 사상과 정합적임을 보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리주의는 사상적으로 존재론적 자연주의를 근원으로 한다. 존재론적 자연주의는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정신현상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현상과 그 변화의 근본원리가 자연(물질)에 있고, 인간이 사실로서 경험 가능한 사물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사물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시공간적 자연 세계에 사실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의 공리주의에서 모든 명제는 사실 판단의 명제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자연적 본성의 사실로부터 선을 정의하는 명제인, ‘모든 사람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결국 폐락(행복)뿐이므로 폐락(행복)이 유일한 선이다’를 사실 판단의 명제로 풀어서 쓴다면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본성에 대한 자각과 타인들의 언행에 대한 인식 경험 통하여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폐락(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하여 폐락(행복)만이 보편적으로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선 관념(idea)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보편적 선 관념이 개인들에게 형성되어 있게 된다면 개인들의 집합체인 사회집단에도 보편적인 선 관념이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행위 윤리 규범으로서의 ‘최대행복의 원리’도 소극적으로는 이해되고 적극적으로는 행위 규범으로서 받아

들여 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 개념의 정립을 선 관념의 형성으로 해석한다면, 행위 규범으로서의 ‘최대행복의 원리’는 존재론적 자연주의를 근원으로 하는 공리주의 사상과 정합적으로 사실 판단의 명제로부터 도출되는 윤리 규범으로서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편적 선 관념 존재의 현실적 의의는 무엇인가? 공리주의적으로 추론해 보면, 각자 자기 자신의 폐락(행복)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개인은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이익 위주의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자기 이익과의 관련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 3자적 입장에서 보편적 선 관념과 결부된 ‘최대다수의 행복’의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입법에 대한 동의 여부,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 등의 문제에서 보편적 선 관념이 작용할 개연성이 클 것이다.

다음으로, 윤리 규범인 ‘최대행복의 원리’가 인간 본성의 ‘사실’에 부합되도록 정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설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폐락(행복)만을 추구하는 개인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폐락(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는 행위 규범에 동의할 수 있는가?’ 이 역설이 풀어지자면, 개인이 각자 자기 자신의 폐락(행복) 추구라는 목적을 관찰하면서, ‘최대행복의 원리’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가능하게는 ‘최대행복의 원리’를 개인의 행위 규범이 아닌 사회집단의 제도화 원리, 좁은 범위로는 입법의 원리, 국가 정책의 원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이 입법의 원리로서 ‘최대행복의 원리’에 동의하는 것은 역설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입법과 제도화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형성과 유지는 개인이 자기 이익 추구 목표를 관찰하는 데 근본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므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개인들에게 유익한 보편적 사회조직을 뒷받침하는 입법과 제도화 원리로서 ‘최대행복의 원리’가 바탕이 되는 것은 개인들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행복의 원리’는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성장 촉진 정책, 보편적 사회복지제도 구축 등을 뒷받침하는 원리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고, 법적 측면에서는 합리적 사법 판단의 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하면, 각 개인은 본성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또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윤리 규범에 동의할 수 있는데, 이는 보편적 선 관념이 형성되고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함이다.⁹⁰⁾ 여기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을 ‘이기성이라고 하고, 공동체의 윤리 규범에 동의하는 성향을 윤리성이라고 한다면, 개인은 이기성과 함께 윤리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다. 개인에게 이기성과 윤리성이 병존한다는 이 종합된 해석의 현실성

90) 인간이 보편적 선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지된 사실이다. 그렇지만 선 관념의 내용이 무엇이나, 선 관념이 선협적인 것인가, 경험적으로 형성된 것인가, 선 관념의 내용이 절대적 인가, 상대적인가 등에 대한 논변은 다양하다. 공리주의 근원 사상에 부합하는 선 관념은 선은 폐락(행복)이라는 것이요, 그 선 관념은 경험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라는 뜻이다.

은 단편적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현실을 설명하고 반영하는 학문들의 구조화된 특성과 전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제간 통섭적으로 보면, 주류경제학에서는 개인들이 각자 자기이익의 극대화, 자기 효용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경제행위를 한다고 전제하는 등 공리주의의 인간 본성의 ‘사실’을 이론적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법학계(법학 및 법조계)에서는 공리의 원리(최대행복의 원리)를 중요한 입법 및 사법적 판단의 원리로 삼는 등 공리주의의 윤리 규범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주류경제학에서 암묵적인 전제는 개인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질서가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 사법 등 공공의 영역에서 공리의 원리를 취하되 있어서도 개인들이 사적인 영역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공리주의적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형성된 법을 준수하고 제도적 규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보편적 선관념과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공리주의 윤리론에 내재된 역설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해석은 인간 본성에 따른 쾌락(행복) 추구 행위가 결과적으로 윤리 규범을 만족 시킨다고 하는 해석이다. 이 해석의 현실성은 공리주의에 바탕을 둔 규범경제학의 중심 개념과 핵심 명제에 대한 규범적 의미 추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류경제학의 규범경제학 분야에서는 효율성 개념이 중심 개념이며,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first fundamental theorem of welfare economics)가 핵심 명제이다. 제1정리의 내용은 완전경쟁시장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이 각자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합리적 경제행위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것이다.⁹¹⁾ 여기서 경제의 효율적 상태가 균원적으로는 사회후생이 극대화된 상태를 뜻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효율성 개념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투영된 개념이다. ‘최대행복의 원리’라는 공리주의 윤리 규범에 비추어 제1정리를 해석하면, 모든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면 시장 기능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달성되는 데, 이는 윤리 규범을 결과적으로 만족시키게 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의 주체라는 ‘사실’로부터 ‘최대행복의 원리’라는 윤리 규범을 도출하는 공리주의가 행위에 대한 윤리 판단을 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으로 한다면, 모든 개인들의 자기 이익 추구행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장을 통하여 공리주의 윤리론의 역설은 해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4. 소결론: 공리주의 윤리론의 정합적 해석

91) ‘시장실패가 없다면’이라는 조건은 생략함.

‘사실’로부터 규범을 정립하는 공리주의 윤리론은 근본적으로 ‘사실’과 규범 간의 간극이 내재된 윤리론인데, 이는 한편으로는 형식논리상의 비약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상의 역설로 구체화 된다. 선을 규정하는 동일성 명제는 논리적 비약을 내포하는데, 이를 계기로 한 의미 물음은 공리주의 윤리 규범의 근원적인 ‘몰규범성’을 드러낸다. 결과주의와 보편주의는 이 ‘몰규범성’을 해소함으로써 공리주의 윤리 규범의 ‘규범성’을 지탱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보편적 결과주의의 일차적인 함의는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행위 주체인 개인의 쾌락(행복) 증진을 가져 왔느냐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고통(또는 쾌락(행복))을 초래하였느냐는 것도 판단요소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 단순하게 말하자면,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을 추구하되 결과적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윤리 규범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주의적 윤리 판단의 의의는 무엇인가? 공리주의 윤리론의 정립 근거는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 쾌락(행복)의 증진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다는 ‘본성적 사실’이다. 이와 같은 행위 주체의 사전적 행위 의사결정에는 남의 고통에 대한 배려가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단, 남에게 해를 끼친 경우의 처벌 또는 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확립되어 있다면, 행위 주체는 예상 되는 행위 결과에 결부된 처벌 또는 배상 부담을 고려하여 사전에 행위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보편적 결과주의에 입각한 공리주의 윤리 판단의 의의는 본성적으로 각자 자기 쾌락(행복)의 증진만을 추구하는 개인 행위 주체들이 결과적으로 상호간에 해를 끼칠 개연성을 낮추기 위해 처벌·배상 제도에 동의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주의가 행위 주체의 행위 의사결정의 규범적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주체인 인간의 ‘본성적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 공리주의 윤리론의 특성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리주의 윤리론에서 ‘사실’과 규범 간의 간극은 또한 윤리 규범과 그것의 정립근거인 인간본성 간의 역설적 괴리로 나타나는데, 이 역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풀릴 수 있다. 첫째는, 개인이 각자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 추구라는 목적을 관찰하면서, ‘최대행복의 원리’에 동의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리주의적 개인은 법을 준수하고 제도적 규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면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둘째는, 인간 본성에 따른 쾌락(행복) 추구 행위가 결과적으로 윤리 규범을 만족 시킨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주류경제학의 규범경제학 분야의 효율성 개념과 제1정리를 ‘최대행복의 원리’에 비추어 의미 추론을 하는 것으로서 모든 개인들의 자기 이익 추구행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장을 통하여 공리주의 윤리론의 역설은 해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사실’로부터 윤리 규범을 정립하는데서 비롯되는 역설적 괴리와 논리적 비약은 결과주의와 보편주의에 의해 해소되는 셈이다. 이로써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위는 이중적으로 정당화 된다. 첫째는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가 그 개인 자신의 쾌락(행복)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여기

서 전제는 한 개인의 행위 결과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⁹²⁾ 이는 경제학 개념으로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가 없다는 전제이다. 둘째는 개인들 각자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가 시장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최대행복의 원리’의 윤리 규범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정당화 된다는 것이다. 결과주의, 보편주의는 경제학에서 경제주체의 합리성, 경제의 효율성, 외부효과 등을 윤리 규범과 결부하여 해석 가능케 한다. 개인 차원의 선 관념, 윤리 규범과 아울러 형성되는 보편적 선 관념과 윤리 규범은 직접적으로는 ‘최대행복의 원리’를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정책 행위에 대한 동의 가능성 및 평가의 기준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리주의적 결과주의 및 보편주의를 개인이 그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윤리성과 결부시킬 수 있다면, 공리주의는 ‘결과책임’이라는 하나의 뚜렷한 윤리성을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책임주의는 행위 주체인 개인의 행위 결과에 대해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공리주의와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결과책임주의는 그 자체로서 입법 및 사법적 판단의 유력한 규범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공리주의적 결과주의와 보편주의로부터 ‘결과책임’의 윤리성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범으로 연결될 수는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정당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윤리 판단에 내포된 것은 아니다. 만일 결과책임주의가 항상 공리주의적 결과주의와 보편주의에 부합한다면, 공리주의 윤리론에서 결과책임주의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앞에서 결과주의와 보편주의는 개인 차원에서는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위가 이중적으로 정당화 되는 논거였다. 그 전제는 행위의 결과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었다. 공리주의와 연관하여 해석하자면, 결과책임주의는 바로 이에 대한 책임을 행위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그런데, 결과책임주의의 규범적 의의는 행위 주체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범 이외에도 행위 주체의 행위 결정에 대한 지도적 규범적 구실을 할 수 있을 가능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의 페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 주체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행위를 사전에 행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여기서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행위를 조절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페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의 주체가 그 행위의 결과 필연적으로 남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 인식 가능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페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의 결과로서 남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페락(행복) 증진이 필연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남의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

92) 엄격히 말하면, 행위 주체인 개인이 얻은 페락(행복)의 크기가 남이 겪는 고통의 크기보다 크다면 그 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고, 이와는 다른 한 가지는 우연적으로 불확실하게 되는 경우이다. 사전적 행위 조절이 가능한 규범이 되는 경우는 전자일 뿐이다. 후자의 경우는 결과책임주의의 규범적 구실은 사후적인 책임 부담에 한정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행위 주체가 자기 자신의 페락(행복) 증진만을 추구하여 한 행위가 우연히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조절할 수는 없고, 사후적인 책임 부담만을 할 수 있을 뿐인데, 만일 책임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자기 페락(행복)의 증진만을 추구하는 주체는 책임부담을 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공리주의적으로는 결과책임주의가 행위 주체의 행위 의사결정의 규범으로서 구실할 수는 없으며, 가능하다면 입법의 원리로서 동의될 수 있을 뿐이다. 결과책임주의가 입법의 원리로서 동의되자면, 공리주의적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 상호 간에 우연한 피해를 발생케 한 사람에게 책임 부담케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각 개인의 페락(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연한 피해 발생은 보험적 상황과 유사한데, 공리주의적 개인이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결과책임주의가 우연한 피해 발생에 대한 조치적 입법의 원리로서 동의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면, 사전적 행위 조절의 규범으로서의 결과책임주의는 공리주의 윤리론과 부합하는가? 결과주의와 보편주의로 귀결되는 공리주의 윤리론의 근거는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궁극적으로 자기 페락(행복)의 증진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리주의적 행위 주체의 사전적 행위 의사결정에 있어서 남의 고통에 대한 사전적 배려나 사후적 책임 부담 등의 요소가 규범으로서 작용하지 않음을 뜻한다. 단, 남에게 해를 끼친 경우의 치별 또는 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확립되어 있다면, 행위 주체는 예상 되는 행위 결과에 결부된 책임 부담(고통)을 고려하여 자기 페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적 추론은 결과책임주의는 공리주의 윤리론에서는 자기 자신의 페락(행복)만을 추구하는 주체의 행위 의사결정에 규범으로서는 작용할 수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책임을 부담케 하는 제도적 입법의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선 분석적 추론을 통하여 보인 결과주의 및 보편주의에 입각한 공리주의 윤리론의 합의와 같은 결론이다. 다시 말하면, 결과책임주의는 공리주의 윤리 규범에 결과주의와 보편주의의 이상의 새로운 내용을 부가하지는 않는 것이다.

체계화 하여 말하면, 공리주의의 결과주의 및 보편주의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남에게 해를 끼친 경우의 치별·배상을 명시한 주어진 법제도 하에서 예상 되는 행위 결과에 결부된 치별·배상 부담을 고려하여 자기 자신의 페락(행복)을 극대화 하려는 행위 의사결정을 하게 됨을 뜻하고, 공공의 차원에서는 공리주의적 개인들이 ‘최대행복의 원리’에 입각한 법제도 또는 정책에 동의하게 됨을 의미한다. 공공의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첫째, 해당 법제도나 정책이 본인의 이익에 부합되는가 여부 또는 본인의 이익에 부합되는가의 여

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불확실성 하에서 본인에게 이익이 기대되는가 여부, 둘째, 자기 이익과 관련이 없는 입법 및 정책에 대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편적 선 관념에 의한 ‘최대행복의 원리’에 부합되는가 여부 등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선과 쾌락(행복)의 동일성’을 토대로 정립한 공리주의 윤리(도덕)는 체계 내적인 정합성을 갖는 행위 규범으로서 도출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 윤리 원리인 ‘공리의 원리’(‘최대 행복의 원리’) 그 자체도 행위 규범성을 갖춘 것이 아님을 보였다. 공리주의 윤리론은 행위 규범 정립의 원리라기보다는 이미 존립되어 있는 사회규범, 법제도 등을 구성원 개인들이 준수하거나 거스르는 현상에 대한 설명의 원리로서 또는 법제도 형성의 원리로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결과주의 및 보편주의를 특성으로 하는 공리주의가 경제학에서는 윤리성을 필연적으로 ‘경제인’의 합리성으로 환원시키고, 효율성으로 치환시킴을 보인다.

V.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치환되는 윤리성

공리주의의 기초는 다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기본명제는 공리주에서 논증 없이 언명된 것들을 명제화한 것으로, 수학에서의 공리(axiom)와 같은 성격이다.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공리’와 수학의 ‘공리(axiom)’는 물론 다른 말이다.

[기본명제1] 인간은 본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

[기본명제2] 고통은 유일한 악(evil)이고, 쾌락은 유일한 선(good)이다.

[기본명제3] 궁극적으로 쾌락(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만이 윤리적으로 정당화 된다.

공리주의에서 [기본명제1]은 인간 본성의 사실이다. [기본명제2]는 “쾌락은 그 자체로서 선이다.... 그리고 고통은 그 자체로서 악이다... 선과 악이라는 말은 이 밖에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는 벤담 (IPML, Ch. 10, para 10)의 선·악에 관한 언명을 명제화한 것인데, 이는 인간 본성의 사실인 [기본명제1]에 근거하여 선·악을 규정한 것이다. 즉, 만유의 중심에 인간을 놓고, 인간에게 좋고, 나쁜 것을 선과 악으로 규정한 것이다. [기본명제3]은 공리의 원리를 간략화한 것인데, [기본명제1], [기본명제2]를 바탕으로 정립된 윤리적 판단의 원리이다.

기본명제들이 논증의 체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기본명제2]와 같이 선, 악을 규정하는 것은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기초한 공리주의가 인간의 본성적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기본명제1]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이다. [기본명제2]는 각 개인에게 있어서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듯이, 개인들의 집합이요 조직인 사회적으로도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기본명제3]으로 축약된 공리의 원리는 공리주의 윤리론의 핵심인데, 공리의 원리에서는 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의해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쾌락(행복)의 증진 여부를 행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최대다수의 원리(Greatest Happiness Principle)’는 공리의 원리를 더욱 구체화한 것인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옳고 그름의 척도(Bentham, 1891: 93)”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실’로부터 규범을 정립하는 공리주의적 얼개에서는 [기본명제1]이 근본 바탕이 되고 그 위에 [기본명제2] 그리고 [기본명제3]이 정립되어 있지만, 논증을 통해 도출된 관계는 아니다. 그런데 기본명제들은 다음과 같은 연결 관계로 재해석될 수 있다. 만일 인간이 [기본명제1]처럼 그 본성대로 행위를 한 결과 항상 쾌락(행복)의 증진을 가져온다면, [기본명제3]에 의해 본성대로의 행위는 항상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윤리적 행위란 선을 증진시키는 행위이고, 그 선이란 [기본명제2]에 의해 쾌락(행복)이라고 정의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쾌락(행복) 증진이라는 목적 추구 행위가 항상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면, 행위의 합리성이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가능성을 보게 된다. 다음 절에서 ‘경제인’의 합리성이 공리주의적 윤리성을 내포함을 보인다.

1. 합리성으로 환원되는 윤리성

합리성은, 베버(Max Weber)식으로 나누면, 가치 합리성과 도구적 합리성 두 가지로 분류된다.⁹³⁾ 가치 합리성(axiological rationality)은 신념지향 합리성(belief-oriented rationality)이라고도 하는데, 설정된 목적 그 자체가 선한 것, 옳은 것이라는 신념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수단이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지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도구적 합리성은 목적-수단 합리성(means-end rationality)이라고도 하는데, 설정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

93) 베버의 용어에 따르면 가치합리성(wertrational)과 목적합리성(zweckrational)임. 목적합리성이 도구합리성과 같음.

한다는 뜻에서의 합리성이다. 이 분류에 따르면, 공리주의적 합리성은 도구적 합리성인데, 인간 본성에 따라 설정되는 목적은 필연적으로 폐락(행복)의 최대화가 된다. 즉, 공리주의적 합리성은 폐락(행복)의 최대화를 유일무이한 목적으로 삼는 도구적 합리성인 것이다.

각자 자기 자신의 폐락(행복)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 선택행위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폐락(행복)을 증진시킨다면, 합리적 선택행위는 공리주의적 윤리성을 만족시키게 된다. 즉, 공리주의적 합리성은 윤리성을 내포하게 된다.

공리주의적 합리성의 전형은 ‘경제인’의 합리성이다. 신고전학파의 원형에서 ‘경제인’은 효용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이다. 효용극대화 모형의 구축은 제븐스(William Stanley Jevons)에 의해 벤담(Jeremy Bentham)과 밀(John Sutuart Mill)의 공리주의가 경제학 이론에 수용된 결과이다. 공리주의적 합리성이 경제학에 들어와서 ‘경제인’의 합리성으로 환치된 것이다. 경제학에서 효용은 주관적 만족도를 뜻하는데, 본질적으로는 폐락(행복)의 크기와 같은 맥락의 용어로 쓰인다.

‘경제인’의 합리적 선택행위는 다음 두 가지 면에서 폐락(행복)의 증진을 가져옴으로써 공리주의적 윤리성을 만족시킨다. 올 수 있다. 첫째, 행위자 자신의 폐락(행복) 증진이다. 행위 결과 다른 사람에게 고통(피해)을 초래하는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자 자신의 증진된 폐락(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피해)보다 큰 경우에 그 행위는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화 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를 보상하고도 폐락(행복)의 순 증진이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다음 절에서 보이는 경제의 효율성 논변과 결부된다. 각자 자기 자신의 폐락(행복)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위가 시장거래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의 후생의 최대화(개인들의 폐락(행복)의 합의 최대화)를 가져옴으로써 공리주의적 윤리성을 만족시킨다. 바꿔 말하면, 결과적으로 사회후생의 최대화를 가져오는, 즉 경제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행위는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한 행위인데, 그 행위는 바로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위인 것이므로,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위는 공리주의적 윤리성에 부합된다는 뜻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 명제가 성립한다.

[명제1] 공리주의적 인간상인 ‘경제인’의 합리성은 윤리성을 내포하는 합리성이며, 그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화 되지 않는다.

[명제1]은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효용극대화(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선택 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것,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들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조처나 정책은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만일 자유로운 시장을 통하여 개인들의 효용이 최대화 될

수 있다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뜻한다. 즉, 사람의 효용 증진 여부만이 모든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윤리성이 합리성으로 환원되는 근본 원인은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비는 오직 폐락(행복)이며, 따라서 폐락(행복)만이 유일한 선이라는, 선으로서의 폐락(행복)의 유일성에 있다. 이에 근거한 윤리적 판단은 단순해진다. 행위의 궁극적 결과가 폐락(행복)의 증진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것이다.

2. 효율성으로 치환되는 윤리성

효율성은 경제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요, 개념이다. 이절에서는 공리주의적 윤리성은 경제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효율성으로 치환됨을 보인다.

(1) 경제의 효율성

경제의 효율성의 근원적 의미는 일정하게 주어진 자원의 제약 하에서 사회 전체의 후생, 공리주의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효용(폐락, 행복)의 합이 최대로 크게 되도록 자원배분이 이루어짐을 뜻한다.

만일 사람들의 선호가 모두 같고, 효용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면,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의 총 합으로서의 사회후생을 규정하고, 그것을 최대화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정의하는데 문제 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석적 개념으로서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 개념이 정립되었다. 개인들 간의 효용은 비교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는 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파레토 개념은, 어느 누구도 효용이 감소되지 않으면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효용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사회후생이 절대적으로 증가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즉, 경제상태가 X로부터 Y로 변할 때 사회구성원 가운데 그 누구의 효용도 감소하지 않고 적어도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이라도 증가하게 되면 경제상태 Y는 경제상태 X에 비해 파레토 우월적(Pareto-superior)이라 하고 이와 같은 변화를 파레토 개선적 변화라고 한다. 파레토 효율적 상태는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론적으로 이와 같은 파레토 효율적 상태는 유일하지 않고 다수가 있게 되는데, 파레토 개념은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자원배분 상태들 간의 비교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다.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칼도(N. Kaldor)와 힙스(J. R. Hicks)는 잠재적 보상기준(potential compensation criterion)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경제상태 X와 경제상태 Y가 사회후생 면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상태인지 파레토 기준으로는 판별되지 않는 경우, 만일 경제상태 X에서 경제상태 Y로 이행할 때 효용 면에서 이득이 있는 사람들이 효용 면에서 손실을 보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도 이득이 남게 된다면 경제상태 Y를 경제상태 X보다 사회후생 면에서 더 나은 상태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2) '경제인'의 합리성과 경제의 효율성

'경제인'의 합리성은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성이다.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경제활동을 소비와 생산으로 양분하여 보면, 소비자는 효용극대화, 생산자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경제인'의 합리성과 자유로운 완전경쟁시장을 이론적 전제로 한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정리1> 완전경쟁시장경제에서는 경제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본래의 정리에는 이론적 구비조건과 예외 사항으로서의 시장실패가 거론되지만, 중심 내용은 명확하다. 자유로운 경쟁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은 효율적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경쟁시장경제를 전제로 할 때, 사회구성원 개인들, 즉, '경제인' 개인들의 자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달성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명제가 정립된다.

[명제2] '경제인'의 합리성은 경제의 효율성을 도출한다.

(3) 효율성으로 치환되는 윤리성

경제의 효율성이 공리주의적 윤리성을 내포한다는 명제는 앞선 [명제1]과 [명제2]로부터 도출된다. 각각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명제1] 공리주의적 인간상인 '경제인'의 합리성은 윤리성을 내포하는 합리성이며, 그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화 되지 않는다.

[명제2] '경제인'의 합리성은 경제의 효율성을 도출한다.

[명제2]가 의미하는 바는 '경제인' 각각의 합리적인 선택행위는 필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달성케 한다는 것이다. [명제1]은 '경제인'의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경제인'의 합리성은 필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도출하므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의 결과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므로 다음 명제가 성립된다.

[명제3] 경제의 효율성은 공리주의적 윤리성을 내포하며,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명제3]은 공리주의적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제일 기준은 효율성이 된다는 의미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하며,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이다. 만일 경제의 형평성 증진이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또한 경제의 효율성은 동태적(dynamics)으로는 경제의 성장과 결부되므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제의 효율성을 근원적 의미대로 사회후생의 최대화, 공리주의적으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쾌락, 행복)의 합이 최대로 크게 됨이라고 한다면, [명제3]은 공리주의의 '최대행복의 원리'(greatest happiness principle)'과 상통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원리는 간단히 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은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풀이하자면, 개인의 선택행위나 정부의 정책행위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을 줄수록 윤리적으로 정당성이 더 커지게 된다는 뜻이다.

3. 경제학에서 윤리성 실증의 문제

[명제1]과 [명제3]은 공리주의와 결합된 경제학에서는 필연적으로 윤리성이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치환됨을 의미한다. 굳이 구별해서 말하자면, 공리주의적 윤리성은 개인 행위의 차원에서는 합리성으로 치환되고([명제1]), 경제 전체의 차원에서는 효율성으로 치환됨을 뜻한다

([명제3]). 주류경제학에서 합리성과 효율성 요소만이 경제 분석과 탐구 요소로서 상정되고, 윤리성 요소는 실종된 것은 이와 같이 해명된다.

경제학에서 윤리성 요소가 실종된 근본 원인은 윤리 규정문제의 복잡성과 객관성 논쟁으로 인한 문제 회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와 결합된 경제학에서는 필연적으로 윤리성이 합리성·효율성으로 치환됨으로써 주류 경제학에서 윤리성 문제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합리성·효율성으로 윤리성이 치환된 것은 윤리적 정당성, 즉, ‘옳음’을 인간의 본성적 시선로부터 정립한 데 기인한다. 공리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명제들을 종합하면,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폐락(행복)만을 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폐락(행복)만이 유일하게 좋은 것, 선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키는 행위만이 윤리적으로 옳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에서 폐락(행복)만이 유일한 선이라는 함은 그것만이 절대적 선이요, 배타적 선이라는 뜻이다. 궁극적으로 그것을 저해하는 그 어떤 것도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인, 즉, 형식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적 사실로부터 윤리 규범을 도출하는 것,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은 궁극적으로 폐락(행복)만을 원하는 것이므로 폐락(행복)만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선이라고 간주하는 것 등으로 인하여 윤리성이 합리성·효율성으로 전적으로 치환된 것이다.

4. 합의 – 공리주의적 주류경제학에서의 규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리주의 윤리론은 개인의 행위 의사결정에 있어서 규범적 작용을 하지 못한다. 즉, 행위를 지도하거나 인도하는 규범성을 지니지 못한다. 행위의 결과에 대해 결과주의·보편주의적으로 판단을 할 뿐이다. 행위 규범은 오히려 합리성에 있다. ‘경제인’의 합리성으로 전형화 된 공리주의적 합리성은 목적 지향적 합리성이다. 공리주의의 특색 중 하나인 극대주의(maximalism)는 ‘최대행복의 원리’에서 비롯되었지만 경제학에 와서는 행위 주체의 이익의 극대화로 변모되어 나타났고, 이는 ‘경제인’의 행위 목적이 되었으며, 합리성은 개인 행위 주체의 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목적 지향 합리성이 된 것이다. ‘경제인’의 합리성은 경제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주류경제학의 파라다임의 핵심 중 하나가 되었지만, 본래 윤리 사상인 공리주의의 맥락에서 해석하면, 폐락(행복)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 주체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위 하여야 한다는 규범성을 내포한다. ‘경제인’의 합리적 행위는 이중적으로 정당성 된다.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적 ‘선’인 자기 자신의 폐락(행복)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것이요, 사회 차원에서는 개인들 각자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가 합리적으

로 이루어지면 시장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달성되는데, 이는 ‘최대행복의 원리’가 만족됨을 뜻하기 때문에 정당화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리주의적 합리성은 목적 지향적 합리성일지언정, 그 목적은 바로 행위 주체의 본성과 결부된 것이다. 따라서 합리성은 행위 주체가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달성케 하는 합리성인 바, 합리적 행위는 본성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공리주의에서 유일한 행위 규범이라 할 수 있는 합리성은 ‘오로지 폐락(행복) 추구’라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합리성이요, 행위 규범인 것이다. 이를 풀어쓰면,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 자신의 폐락(행복)을 추구하는 본성대로 행위 하되, 폐락(행복)을 극대화 하도록 합리적으로 행위 하여야 한다’라고 쓸 수 있을 것이다.

뒤집어 보면, 공리주의에서 자기 자신의 폐락(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사실’로서 인간의 행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대전제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 근거로서 인간이 추구하는 폐락(행복) 자체가 유일한 선이므로 궁극적으로 폐락(행복)을 냉는 행위만이 정당하다는 윤리적 규범 정립의 근거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궁극적으로 폐락(행복)을 추구함’은 사실 설명의 핵심요소요, 또한 윤리 규범 정립의 유일한 근거이므로 공리주의에서 ‘사실’과 ‘윤리 규범’은 ‘오로지 폐락(행복)추구’라는 인간의 본성을 공통 핵심 요소로 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VI. 결론

아더 홉스(Arthur F. Holmes)는 그의 저서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약 반세기 전에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인간의 폐지」(The Abolition of Man)에서 도덕적 판단이 주관적 감정으로 축소되었고, 인식 작용을 통한 의미가 모두 거부되었다고 단언했다. 10년 후에 엘리자베스 앤드콤은 공리주의가 훑쓴 반세기 동안 도덕 법칙에 관한 언급이 모두 말살되었다고 항의했다(Holmes, 2004: 11).”고 공리주의의 영향력을 폐력하였다.

공리주의는 주류경제학에 들어 와서 윤리성을 합리성으로 환원시키고, 효율성으로 치환시켰다. ‘경제인’은 공리주의적 인간 본성대로 궁극적으로 자기 폐락(행복)의 극대화를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행위 주체인데, ‘경제인’의 합리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경제의 효율성은 공리주의적 윤리성을 내포함으로써 치환한다. 공리주의와 결합된 주류경제학에서는 필연적으로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규범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된 근원은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적 인간관과 이에 근거한 ‘선(good)’ 개념의 정립에 있다. 존재론적 자연주의에서는 윤리 규범과 가치의 연원을 ‘좋음(good)’에 두고, ‘옳음’이란 ‘좋음’을 최대화 하는

것이라고 한다. ‘모든 인간은 본성에 따라 궁극적으로 오로지 폐락(행복)만을 추구함’이 ‘사실’이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 ‘오직 폐락(행복)만이 선(good)이고, 선이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폐락(행복)이다’라고 하는 공리주의의 동일성 명제가 윤리성이 효율성으로 치환된 근원인 것이다. 행위 규범이 없는 ‘경제인’의 경제학의 귀결이다.

주류경제학의 효율성 규범은 경제학의 태두인 아담 스미스의 윤리 규범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효율성 규범의 토대인 ‘공리의 원리’와 아담 스미스의 윤리 규범의 원리인 ‘공정한 관찰자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 가운데 하나인 공감(sympathy)의 정서로부터 도출되는 공정한 관찰자 원리는, 피관찰자인 행위자 및 행위에 의해 영향 받는 피해자의 사정과 처지를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관찰자(well-informed impartial spectator)가 행위자의 행위를 정당한(proper) 것으로 승인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이익을 우선적으로, 주로 추구하는 행위자라 할지라도 개인적 인간관계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존중 받기를 원하는데, 이는 관찰자의 승인 얻기를 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를 위하여 행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규범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한 관찰자는 개인의 내적 판단 주체이지만, 개인들의 내적 규범적 판단이 외화 되어 나타나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요, 설정된 것이 법제도라고 한다면, 공정한 관찰자 원리는 사회적 규범의 유지 및 형성, 법제도 형성의 원리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도덕(윤리)의 원리로서의 ‘공리의 원리’와 ‘공정한 관찰자 원리’ 간의 근본적 차이는 인간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리주의에서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오로지 폐락(행복)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위하는 자애(self-love)의 정서적 충동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와 더불어 남의 처지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본성,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본성, 양심이 있음을 보았다.

인간 본성을 근거로 선과 폐락(행복)을 동일시하고, 이를 규범 정립의 유일한 기초로 삼는 공리주의에서는 암묵적으로 ‘인간이 본성적으로 폐락(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임을, 즉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제러미 벤담의 언표를 근원적으로 보면, 인간은 자연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인데, 자연은 인간을 오로지 폐락(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존재로 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폐락(행복)만이 유일한 선이요, 선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함은 자연이 인간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 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아담 스미스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돌보아 보존하고 위하는데서 비롯된 자애심(self-love)이 혼존하는 인간들에게 탐욕, 지배욕, 명예욕 등으로 왜곡되어 나타남을 보았다.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근거한 공리주의 윤리론은 필연적으로 결과주의를 행위 판단의 기준

으로 삼게 된다. 이와 같은 공리주의 윤리론은 인간 행위의 동기와 의도를 윤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칸트의 윤리론과 대척점에 서 있다. 공리주의 인간관에 의하면 사람들은 본성대로 각자 자기 폐락(행복)의 증진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 본성대로 하고자 함이 바로 행위의 동기요 의도인 것이다. 즉, 공리주의에서는 인간 행위의 동기나 의도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폐락(행복)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에서는 행위의 동기나 의도는 윤리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본성을 지닌 공리주의적 인간은 선과 악을 규정하는 주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서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공리주의 인간관에서 보는 대로 단일한 것이 아니고, 아담 스미스 등에 의해 설계된 대로 중첩되어 있는 것이라면, 공리주의적 인간은 양상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느 한 면만을 부각시켜 단일화화 한, 베버의 개념으로는 이념형의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실존하는 인간의 현실사회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또한, 특히 이에 기초하여 경제사회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양상화된 이념형 인간인 ‘경제인’을 전제로 한 연구 결과를 직접 적용하는 데는 현실성의 문제와 ‘경제인’의 무윤리성에서 비롯되는 행위 규범 부재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공리주의와 결합된 경제학에서 공리주의적 인간인 ‘경제인’은 경제학자인 필자에게 이중적 의미가 있다. 본질적으로는 경제주체로서의 ‘경제인’의 의사결정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이지만, 이에 수반하여 ‘경제인’의 시각을 통하여 경제를 보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경제인’의 양상적 구체성은 경제학자에 의해 현시된다. ‘경제인’은 경제학자의 자기 반영이 될 수 있고, 경제학자는 어느덧 ‘경제인’이 되어 갈 수 있고, 경제학자의 주장은 ‘경제인’의 주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관련 학문은 자연과학과는 다르게 연구 주체와 연구 객체가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다. 이는 법칙불변적인 현상을 연구 객체로 하는 자연과학, 연구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과학과 다른 특성이다. 연구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까닭은 사회관련 학문은 객체에 대한 주체의 이해와 결연이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학문이요, 사회는 자연법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칙 불변적인 자연과는 달리 인간에 의해 형성되어 가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에서 연구 객체로서의 ‘경제인’이 내포하고 있는 사상과 연구 주체는 무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종합하여 보면, 경제학의 윤리성 논제의 실종은 ‘경제인’의 무윤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류경제학은 분석 명제를 다루는데, 분석 명제는 주어에 이미 숨어가 내포된 명제요, 경제학에서 주어는 ‘경제인’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연정·정원규 (2003), “밀 『공리주의』,” 『철학사상』 별책 제2권 9호,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김완진·송현호·이재율 (1996), 『공리주의·개혁주의·자유주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정하 (2003), “칸트 『실천이성비판』,” 『철학사상』 별책 제2권 6호,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정원규 (2003),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철학사상』 별책 제2권 8호,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소병철 (2008), 『합리성과 도덕성』, 서울: 서광사.
- Bentham, Jeremy (2000),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Kitchner: Batoche Books.
- _____ (1891), *A Fragment on Government*, ed. by F.C. Montague, Oxford: Clarendon Press.
- Hare, John (2007), *God and Morality*,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Hare, Richard M. (2004), *Moral Thinking*, 김형철·서영성 공역, 『도덕사유』, 서울: 서광사.
- Henrich, Dieter (1983), *Die Einheit der Wissenschaftslehre Max Weber*, 이상률 역, 『막스 베버의 사회과학 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이삭.
- Holmes, Arthur F.(2004), *Fact, Value, and God*, 이경직 역, 『사실, 가치, 하나님』, 서울: IVP.
- Mill, John Stuart (2001), *Utilitarianism*, Kitchner: Batoche Books.
- Moore, George.E. (1959), *Principia Ethica*,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Pannenberg, Wolfhart (2008), *Grundlagen der Ethik*, 오성현 역, 『기독교윤리의 기초』, 서울: 한들출판사
- Smith, Adam, (200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박세인·민경국 공역, 『도덕감정론』, 서울: 비봉출판사.
- Ulrich, Peter(2010), *Zivilisierte Marktwirtschaft*, 이혁배 역, 『신자유주의시대 경제윤리』, 서울: 바이북스.

경제/02/논평문/

“주류 경제학에서 윤리성 논제 실종 문제의 근원”의 논평

이윤재 (숭실대 교수)

1. 문제의 제기

경제학의 문제점의 하나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를 근원적인 부분에서 논증하고 있어 매우 의미 있는 논문으로 평가됨. 원래 경제학은 정치경제학(potitical economics)였는데, 과학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보편적인 인간의 경제행위가 아닌 지나치게 이상적인 인간상 (경제인: homo economicus)을 상정하고 경제행위를 설명하려 하여 현실의 경제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런 문제의 제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행동경제학 등에 관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문제의 제기에 대하여 경제학계는 심각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문제 제기의 핵심적인 이슈는 합리성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하여 필자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주요한 논점

1) 필자는 경제학의 기초적인 가정인 합리성을 다루기 위하여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공리주의 문제부터 다루고 있음. 공리주의는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의 기초가 되고 있는 부분임. 최대다수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정 하에 분배적인 불공평성 문제는 덥고 있음을 암암리에 지적하고 있음. 필자는 공리주의와 자연주의의 관계를 독자들을 위하여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유익함.

2) 공리주의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윤리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우선 논리적인 비약이 있음을 긴 지면을 할애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윤리의 기초인 울고 그름에 대한 판단기준이 빠졌음을 강조함. 동기라든가 의도를 도외시 결과가 강조되고 있어 윤리의 중요성이 배제되어 결과만 강조되는 문제점 제기함. 이런 사조들이 오늘날의 경제문제가 지나치게 결과(물질만능주의 내지 성과지상 주의)를 중시하는 부작용이 심각함을 암시하고 있음. 또한 쾌락(행복)이 선과 동일시되는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음.

3) 궁극적으로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적 합리성’ (자신의 쾌락추구를 통한 합리적인 선택이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행복도 증진시켜 선한 것이란 공리주의적 윤리성을 정당화 함). 후에 경제학에선 ‘경제인’의 합리성으로 치환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4) 공리주의에 기초한 ‘경제인’의 합리적 선택은 윤리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논증하고